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파주금촌 금호어울림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공급안내문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안내**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지상 29층, 총 7개동, 1,05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 복리시설
- 주택형 : 26 / 46 / 59A / 59B / 7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85㎡이하 주택만 배정)

구분		26	46	59A	계
기관별 세대수배정	국가유공자	1(5)		2(10)	3(15)
	장애인	경기도		1(5)	3(15)
		서울특별시		1(5)	
		인천광역시		1(5)	
계	1(5)	1(5)	4(20)	6(30)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까지 가능하며, 상기 배정세대의 "()"는 예비 추천자 수임
-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구분	26	46	59A	59B	74	계
일반공급	3	1	18	1	3	26

-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추천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 신청 가능)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미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II 공급일정 안내

구분	일자(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5.09.18.(목)		홍보관,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홍보관 개관	2025.09.18.(목)		당사 견본주택(아래 약도 참조)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5.09.30.(화)		인터넷 접수(https://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09:00 ~ 17:30
일반공급	1순위	2025.10.01.(수)	
	2순위	2025.10.02.(목)	
당첨자 및 동호수발표	2025.10.15.(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
정당계약	2025.10.27.(월) ~ 2025.10.29.(수)		당사 홍보관

※ 위 일정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5년 장기복무군인 청약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으로 하여야 합니다.(현장접수 불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청약홈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 단,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자격확인 제출서류'의 공통서류 및 유형별 필수서류를 모두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 합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III 신청자격 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9.18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청약통장 불필요)

신청자격		기관추천 특별공급		일반공급1순위
입주자 저축		필요(6개월 이상, 예치금)		필요(12개월 이상, 예치금)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3.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내에 있는 자.

IV

당첨자 선정 방법 안내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동별·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당첨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V

기타 유의사항 안내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처리 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의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 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 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이외 자세한 사항은 '파주금촌 금호어울림' 대표번호(031-957-8005)로 문의 바랍니다.

■ '파주금촌 금호어울림' 견본주택 위치도



- 현장위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홍보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173(금촌동)
- 청약 및 계약 문의 ☎ 031-957-8005
- 홈페이지 : <http://www.pjkhapt.com>

- 단위세대 평면도(확장형)

<p>26m²형</p> 	<p>46m²</p> 
<p>59m² A형</p> 	<p>59m² B형</p> 
<p>74m²</p> 	

※ 위 평면도는 현재 마감재 등 세부사항이 미정인 상태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면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카탈로그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